부평구문화재단

「2024년 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4. 12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

# 목 차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 1

Ⅱ. 인권경영 추진체계 ····· 2

Ⅲ. 인권영향평가 실시 ····· 5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 15

Ⅴ. 유효성 검증 ····· 19

#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 기관(기업)의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사회적 요구 반영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재단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정책 마련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 2 추진목적

□ 재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객·지역민·사업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체계구축 및 인권존중 문화확산을 통한 인권경영 실현

□ EU 공급망 실사 등 인권·환경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인권경영 실현을 통한 인권경영 대외 확산 및 공급망 관리 노력

## 3 추진현황

| 중장기 로드맵 | 비전 : 인권경영 이행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br>[~'23 인권경영 제도구축, ~'25 인권경영 내재화, '27~ 인권 문화확산] |
|---|---|
| **추진전략** | **주요내용 : 분야별 전략 마련을 통한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br>• 노동권 보장 • 고용상 비차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 심의기구 운영<br>• 인권 리스크 도출 및 개선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 인권존중 문화확산 등 |
| **모니터링** |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잠재적·실제적 리스크 진단 및 취약요소 발굴·개선 이행<br>• 이해관계자 인권 실태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 활동<br>•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 및 인권경영 의견수렴·주요 이슈 도출 – 정책 반영 |
| **문화확산** | • 법정의무 외 인권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 의식 제고 및 상호존중 내재화 노력<br>•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ESG 관련 홍보 및 신고채널·구제절차 안내<br>• ESG경영과 연계하여 전사 사업 운영 시 인권·환경 보호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

# Ⅱ. 인권경영 추진체계

## 1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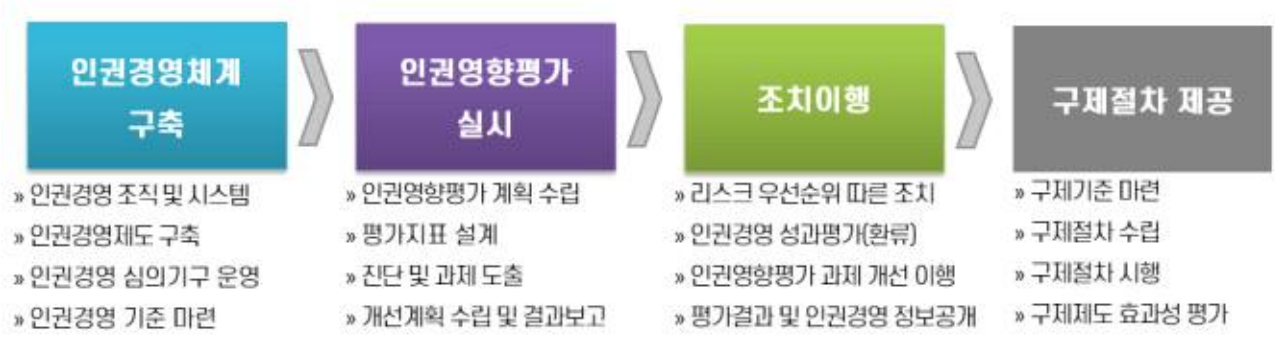


## 2 추진조직 구성

❑ 인권경영 추진조직

| | | | |
|---|---|---|---|
| • 인권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 | • 인권경영 심의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
| • 인권경영 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 | • 인권경영 전담부서 | 기획조정팀 |
|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대표이사 | • 인권경영 담당 | 기획조정팀<br>(032-500-2014) |

❑ 인권경영 전담부서

○ 주요역할 : 인권경영 정책수립 및 계획추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교육 운영, 인권경영 심의기구 운영,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구제절차 운용 등

❑ 인권경영 심의기구

○ 목적 : 인권경영 정책 권고 및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의결 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3명) : 대표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근로자 위원
- 외부위원(4명) : 인권단체 활동가, 노무사,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 3 인권경영제도 마련

❑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및 공표

○ 선언: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을 반영한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및 공표(2023)

○ 구성: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경영 규범을 바탕으로 재단이 추구하는 인권경영 이념을 담은 12개 실천항목으로 구성

※ 붙임. 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지침 제정 및 공개

○ 목적: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실행을 위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인권경영 운영지침(2022.11.30)

| | |
|---|---|
|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
| 인권경영 일반원칙 |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보장, 안전 및 보건 등 |
|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교육 등 |
| 인권경영위원회 | 설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이해충돌 기피 등 |
|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 인권침해 구제 | 인권침해구제 절차 |

## 4 구제절차 운용

❑ 목 적: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의 효과성 제고, 피해자 보호 등

❑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구제절차 관련 기준 마련(운영지침, 구제세칙, 구제절차 매뉴얼), 대내·외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구제 심의·의결, 신고자의 신분보장·비밀유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시행

붙임) 인권경영 선언문

#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문화다양성,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적,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고용에서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지하며,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참여의 권리의 실현과 보호 의무를 다한다.

하나, 우리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가치 발굴과 구민의 지속가능한 문화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 Ⅲ. 인권영향평가 실시

## 1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보고지침 '인권영향평가' 실시·보고 권고

❑ 재단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29조(인권영향평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실시

❑ 재단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관련 잠재적 리스크 파악 및 개선 노력

## 2 추진개요

☐ **인권영향평가 계획**

○ 금차년도 인권영향평가 범위 및 대상, 실시 기간, 외부 전문가 활용 등

☐ **인권영향평가 대행**

○ 대 행 사 : 한국인권경영연구소

○ 계약기간 : 2024. 9. 19. ~ 2024. 12. 31.

○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실시·진단, 과제도출·개선계획 수립, 유효성 검증

☐ **인권영향평가 교육**

○ 일시·대상 : 2024. 11. 01,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담당

○ 내용 : 인권경영 등의 이해를 위한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방법 교육

☐ **인권영향평가 참여**

○ 목 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영향 중대성 평가 과정 운영

○ 대 상 : 임직원(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자 포함), 주요 사업 파트너

○ 내 용 : 인권경영 제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실태 / 공급망 인권 실태 등

## 3 인권영향평가 방법

❑ 평가주체 : (내부) 기획조정팀, (외부) 한국인권경영연구소

❑ 평가기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2024. 10. 01. ~ 11. 22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024. 10. 07. ~ 11. 29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관리체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문화예술교육

❑ 평가구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관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각 부문별 인권 담당 대상 교육, 서면조사, 현장점검 등 실시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 및 준비정도 충족도 평가

○ 평가체계 : 답변 명확화 목적의 '예/아니오' 등에 따른 근거 제시 및 증빙 확인

| 구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
| 점수 | 2점 | 1점 | 0점 | 평가제외 | 평가제외 |

○ 점수도출 : 지표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하여 전체평점 도출

| 평점 | 100~ | 89~ | 79~ | 69~ | 59~ | 49~ | 39~ | 29~ | 20 점 |
|---|---|---|---|---|---|---|---|---|---|
| 구분 | 90 점 | 80 점 | 70 점 | 60 점 | 50 점 | 40 점 | 30 점 | 20 점 | 미만 |

※ 타 평가결과와 비교 시 유의사항(평가지표가 다르기에 타기관 혹은 부서간의 비교는 의미 없음)

## 4 인권영향평가 과정

❑ 국가인권위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절차'에 근거한 평가 운용

| 구분 | 수행절차 | 주요내용 |
|---|---|---|
| 기관운영 | 1. 실시계획 수립 | 》 인권영향평가 목적, 원칙, 평가 주체, 기간 및 예산 등 계획 수립<br>–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기반 재단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 작성 |
| | 2.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 》 세부평가지표에 맞는 증빙자료 작성을 위한 교육(혹은 설명)(부문별 인권담당자) |
| | 3. 인권경영위원회 자료 제출 |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취합 및 평가를 위한 제출(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
| |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심의) · 결과보고 | 》 취합한 자료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 | 5.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 인권경영위원회는 결과를 인권 담당부서에 통보<br>》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 주요사업 | 1. 실시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식별 | 》 기관 운영 사업중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 영향도(잠재적 인권리스크)가 큰 사업 선정<br>–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및 식별(사업부서 논의) |
| | 2.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부서 현황 반영) | 》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 사업의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br>– 분석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할 지표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 |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 》 해당 사업부서가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 관련 교육 실시 |
| |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취합 및 평가를 위한 제출(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
| | 5.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심의) · 결과보고 | 》 취합한 자료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 | 6.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 인권경영윈원회는 결과를 인권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 **세부과정 및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 주　관 : 기획조정팀
- ▸ 내　용 : 인권영향평가 기간 및 대상, 추진범위, 외부 전문가 참여 등

❑ 인권영향평가 지표(체크리스트) 마련

- ▸ 주　관 : 인권영향평가 주관부서(기획조정팀)
- ▸ 추진기간 : 2024. 9. 23. ~ 2024. 9. 30.
- ▸ 주요내용 : 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한 진단 지표(체크리스트) 마련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현황 작성 교육

- ▸ 일　시 : 2024. 11. 01. 10:00 ~ 11:30
- ▸ 참　석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담당
- ▸ 내　용 : 인권영향평가 지표 소개 및 재단 현황 작성법 등 설명

❑ 인권영향평가 실시

- ▸ 기 간 : 2024. 10. 01. ~ 11. 29.
- ▸ 내 용 : 인권영향평가 진단 및 과제 도출, 개선계획 수립

| 추진기간 | 구분 | 대상 | 담당부서 |
|---|---|---|---|
| 24. 10. 01<br>~ 24. 11. 22 | 기관운영<br>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체계 |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
| 24. 10. 07<br>~ 24. 11. 29 | 주요사업<br>인권영향평가 | 문화예술교육 | 예술교육팀, 기획조정팀 |

❑ 인권영향평가 심의

- ▸ 일　시 : 2024. 12. 26. 14:00 ~ 16:00
- ▸ 참　석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위원, 인권경영 주관부서, 외부 전문가
- ▸ 내　용 : 관련 과제 및 개선계획 등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인권경영 정책 권고

## ❑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 점검

○ 직전년도 주요이슈

≫ 인권경영체계 점검(인권경영 헌장 및 이행지침 점검 · 인권침해 구제 세칙 및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 · 심의기구 운영 등)

≫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인권경영 발전전략 추진(법정의무 외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

≫ 인권경영 관리체계 등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직전년도 핵심이슈 개선성과

| 분 야 | 직전년도 핵심이슈 | 추진성과 | 기대효과 |
|---|---|---|---|
| ❶ 인권경영 교육 | 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관련 교육 추가 실시 | 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교육 실시<br>–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br>– 인권경영의 이해 및 사례 교육 | 상호존중 내재화 |
| ❷ 인권경영 체계 | 인권경영 페이지 구축 및 정보공개 | – 재단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페이지 구축<br>– 인권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br>–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설 | 정보공개 및 구제제도 강화 |
| ❸ 공급망 관리 | 사업파트너의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관리 |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약제도 운영<br>–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서약 양식 마련<br>–서약제도 운영기반 조성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 ❑ 중대성 평가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지침 주요 권고사항인 '중대성 평가' 과정 진행

○ 평가지표 설계 및 주요이슈 도출을 위한 이슈 Pool구성 - 주요이슈 도출 및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중대 이슈 선정 과정 - 외부 전문가 유효성 검토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유효성 검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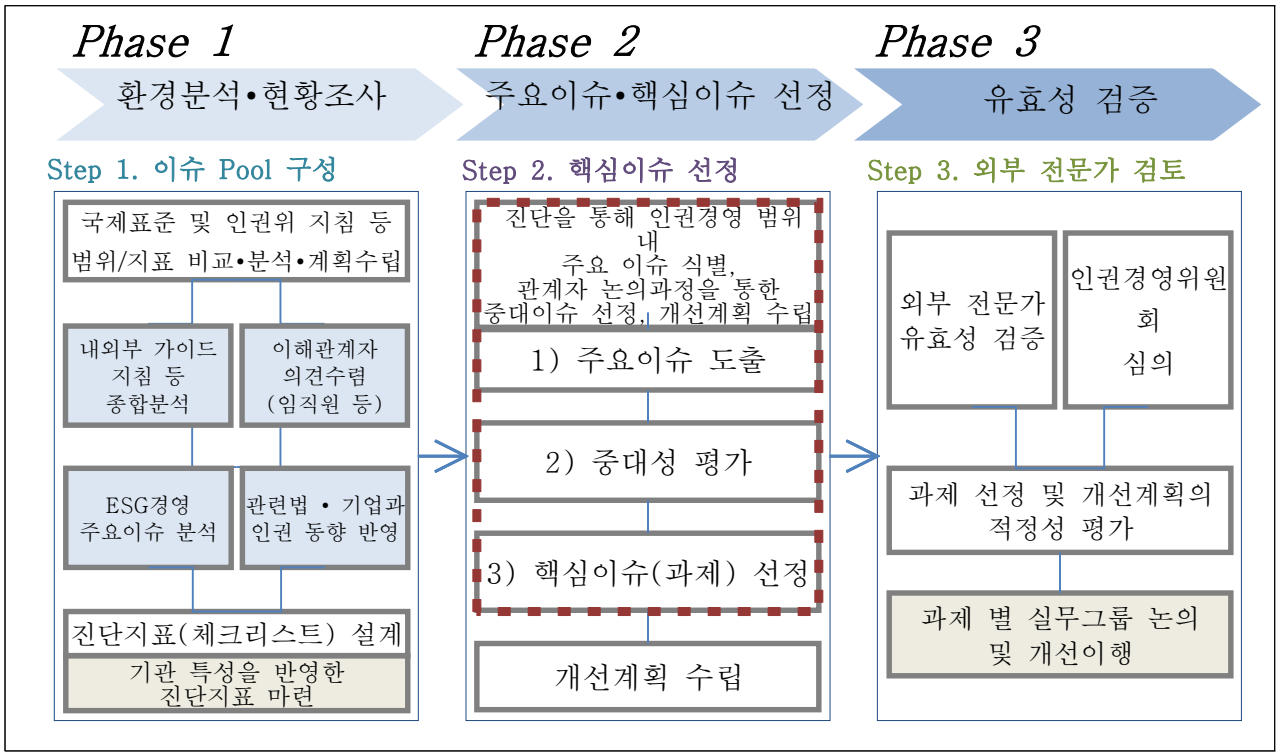


○ Step 1. **인권경영 이슈 Pool 구성**

- 이슈 Pool 구성을 위한 기본 현황 조사
  - 정보공시 요구사항 조사(인권위 매뉴얼 및 신규지침, K-ESG)
  - 벤치마킹 분석 : 공공 인권경영 주요이슈 검토
  -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및 재단운영·사업현황 파악
  -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미디어리서치, 각종 언론기사 등)

- 이슈 Pool 검토
  - 미디어 분석 : 재단 운영, 주요사업 관련 이슈 등 언론기사
  -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조사(국제표준, 이니셔티브 등)
  -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반영(비정규직 포함 임직원, 협력사 등 설문/인터뷰)
- 주요이슈 도출 및 진단지표 범위 설계, 지표 제작
  - 인권경영 범위 내 이슈 융합 및 주요이슈 선정(인권/노동/사회/환경)
  - 재단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현황 및 매칭을 통한 유효성 파악

○ Step 2. **핵심이슈 선정**

- 지표 별 진단을 통한 인권경영 범위 내 취약요소 등 이슈 식별
-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심각성, 시급성 측면을 고려하여 부서별 논의과정을 통한 핵심이슈(과제) 선정
  - 핵심이슈 별 개선 계획 수립

▸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과제 선정 및 개선계획 수립**

| 구분 | 도출이슈 | 핵심이슈 | 비고 |
|---|---|---|---|
| 기관운영 | 4건 | 4건 | 도출이슈에 대한 전면 수용 |
| 주요사업 | 3건 | 3건 | 상동 |

○ Step 3. **유효성 검증**

- 핵심이슈 선정결과와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보고지침과의 대조를 통한 인권경영 범위, 지표 유효성, 과제 별 개선전략의 타당성 등 추가 검토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과정 진행

▸ 세부 과제 별 실무그룹 논의 및 개선 이행 계획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임직원 설문결과)

○ 조사기간 : 2024. 10. 29. ~ 11. 06.
○ 응답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응 답 률 : 42%(표본수 : 130명, 응답자 55명)
○ 문 항 수 : 총 4개 분야, 26개 문항(선택식 25, 주관식 1)
○ 응답결과

– 선택식 설문조사 결과

| 분야 | 세부항목 | 긍정의견(%) | 부정의견(%) |
|---|---|---|---|
| 인권의식 및 인권경영 제도 (전년과 문항 동일) | ‣ 인권경영 의식, 적절한 교육<br>‣ 근로권 보장, 고용상 비차별<br>‣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산업안전<br>‣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57.8<br>*전년대비 6.5 상승 | 16.8<br>*전년대비 2.3 하락 |
| 직장 내 인권실태 조사 (전년대비 문항변경) | ‣ 갑질/괴롭힘 경험, 교육/정책 수준<br>‣ 성희롱 경험, 교육/정책 수준<br>‣ 스토킹 경험(별도 – 직접경험 : 2) | 47.5 | 13.5 |
| 인권보호 대응체계 (전년과 문항 동일) | ‣ 고충처리 제도 및 구제절차 인지<br>‣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응체계 (피해자 보호 - 2차피해 방지 순) | 71<br>*전년대비 25.6 상승 | 5<br>*전년대비 15 하락 |
| ESG경영 의견수렴 (금년 신규) | (설문항목)<br>‣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주요이슈 적합도 | (부문별 응답 최상위)<br>‣ 친환경 사업운영·지원<br>‣ 차별없는 문화예술 기회<br>‣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다양성 | |

※ 긍정의견 :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 부정의견 : (아니다) 및 (매우 아니다)

–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 )는 응답수

| 분야 | 인권경영 관련 건의사항 |
|---|---|
| 건의의견 | ‣ 문화적 다양성 존중 노력(1) |
| | ‣ 직원 의견수렴, 소통 활성화(1) |
| | ‣ 리더십, 임원참여 증대(1) |
| | ‣ 기타의견 : 특별한 의견없음 등(3) |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사업 파트너 설문결과)

○ 조사기간 및 대상 : 2024. 11. 13. ~ 11. 20. / 주요 협력사 및 예술인

| 분야 | 주요이슈 |
|---|---|
| 주요이슈 | ‣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단 <인권침해 신고채널> 홍보 강화 |
| | ‣ 예술인 권리 보장 관련 교육 등 지원 강화 |

# 5 인권영향평가 추진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지표구성 : 총 10개 분야 33개 평가 항목 및 총 142개 세부 지표 선정

○ 지표특징 :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

○ 이해관계자 참여 : 기획조정팀 등 평가대상 부서, 외부 전문가

– 지표 개정, 핵심이슈(과제) 도출을 위한 중대성 평가 논의

【202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분야 | | 평가항목 | 전년 대비 변동내역 |
|---|---|---|---|
| 1 | 인권경영 체계구축 (6개) | 1) 인권존중정책 선언(6개)<br>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5개)<br>3)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6개)<br>4) 인권경영 성과(7개)<br>5) 구제절차 마련(7개)<br>6) 인권교육 실시(2개) |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4개) | 1) 고용상 비차별(5개)<br>2) 고용상 남녀 비차별(6개)<br>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3개)<br>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2개) |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3개) |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4개)<br>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3개)<br>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5개) | – |
| 4 | 강제노동의 금지(1개) | 1) 강제노동 금지(8개) | 지표 이동(–> 분야 7 통합)<br>– 사업 파트너 강제노동 |
| 5 | 아동노동의 금지(2개) | 1) 연소자 고용(아동 포함) 금지(3개)<br>2) 연소자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7개) | – |
| 6 | 산업안전 보장(4개) | 1) 작업장 안전(5개)<br>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4개)<br>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5개)<br>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3개) | –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 | 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4개)<br>2) 모니터링 실시(2개)<br>3) 보안 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4개) | 지표 통합(<– 분야 4)<br>– 사업 파트너 강제노동 |
| 8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개) |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2개)<br>2) 지역주민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3개) | – |
| 9 | 환경권 보장(4개) | 1)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5개)<br>2) 환경정보의 공개(3개)<br>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5개)<br>4) 재난 등 비상계획 수립(5개) | – |
| 10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4개) | 1) 근무환경 개선(4개)<br>2) 고객인권 보호(4개)<br>3) 사업파트너 인권보호(3개)<br>4) 정보보안(2개) | 일부 지표 내용 수정/추가<br>– 예술인 권리보장제도 신규<br>– 기록물 관리 관련 신규 |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지표구성: 총 2개 분야, 6개 평가 항목 및 15개 세부 평가지표 선정

○ 지표특징:

1)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마련

① 체계구축 및 성과관리, 사업운영, 안전관리 등 점검

2)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관련 내용 마련

① 직원 인권보호,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보호,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 이해관계자 참여 : 예술교육팀, 기획조정팀 등 평가대상 부서, 외부 전문가

– 주요사업 선정, 지표 개발, 핵심이슈(과제) 도출을 위한 중대성 평가 논의

【2024 문화예술교육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분야 | | 평가항목 |
|---|---|---|
| 1 |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관리 (8개) | 1)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2개) |
| 2 | | 2) 사업운영(4개) |
| 3 | | 3) 안전관리(2개) |
| 4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7개) | 1) 직원 인권보호(2개) |
| 5 | | 2)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보호(3개) |
| 6 | | 3)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2개) |

#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2024)

| 10개 분야 33개 항목, 총 142개 지표 | | 담당부서 | 전체지표 수 | 유효지표 수 | 진단결과 | |
|---|---|---|---|---|---|---|
| | | | | | 점수 | 점수(백점환산) |
| 1 | 인권경영 체계 구축(33개) | 기획조정팀 | 33 | 33 | 64 | 96.97 |
| 2 | 고용상의 비차별(16개) |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 16 | 16 | 32 | 100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2개) | 기획조정팀 | 12 | 12 | 24 | 100 |
| 4 | 강제노동의 금지(8개) | 경영지원팀, 기획조정팀 | 8 | 8 | 16 | 100 |
| 5 | 아동노동의 금지(10개) | 기획조정팀 | 10 | 10 | 20 | 100 |
| 6 | 산업안전 보장(17개) | 시설관리팀, 경영지원팀 | 17 | 16 | 31 | 96.88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10개) |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 10 | 10 | 15 | 75 |
| 8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5개) | 기획조정팀 | 5 | 5 | 10 | 100 |
| 9 | 환경권 보장(18개) | 시설관리팀 | 18 | 18 | 34 | 94.44 |
| 10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13개) |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 13 | 13 | 25 | 96.15 |
| 합계(평균) | | | 142 | 141 | 271 | 95.94 |

※붙임.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

## 붙임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

| No | 분야 | 대상 | 핵심이슈 | 개선계획 |
|---|---|---|---|---|
| 1 | 인권경영 체계 | 대내외 이해 관계자 | 인권침해 신고센터 내용 보완 |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내용 보완**<br>– 기관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신고센터 상 안내 내용 보완<br>–> 인권 및 인권침해 소개, 신고대상 안내 |
| 2 | 산업안전 | 임직원 | 업무상 공상자에 대한 지원 | **업무상 공상자에 대한 지원**<br>– 단체 상해보험 가입 유지 |
| 3 | 공급망 관리 | 대외 이해 관계자 |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제도 운영 |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약 시) **'서약 제도' 운영**<br>– 계약 시, 계약 상대자(사업 파트너)의 노동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준수 요구를 위한 공급망 관리 차원의 서약서 요청(징구) |
| 4 | 환경권 보장 | 대내외 이해 관계자 | 환경부문 관리 정보 공개 | **환경부문 관리지표 및 세부 데이터 공개**<br>–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리지표 및 실적 공개<br>(공식 홈페이지 ESG페이지 내 공개) |

## ❑ 직전년도와의 결과 비교(기관운영 부문)

| 평가분야 | | | 변동내역 | 진단결과 | | |
|---|---|---|---|---|---|---|
| | 10개 분야 34개 항목, 총 143개 지표 | 10개 분야 33개 항목, 총 142개 지표 | | | | |
| | 2023년 | 2024년 | 기관 맞춤형 일부 개선 | 2023년 | 2024년 | 변동내역 |
| 1 |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교육강화(33개) | 인권경영 체계 구축(33개) | 변동 없음 | 95.45 | 96.97 | 타 기구 구제 이용 시 조력 |
| 2 | 고용상의 비차별(16개) | 고용상의 비차별(16개) | 변동 없음 | 100 | 100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2개)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2개) | 변동 없음 | 100 | 100 | |
| 4 | 강제노동의 금지(10개) | 강제노동의 금지(8개) | 분야 7로 이동·통합 (사업 파트너 강제노동 예방) | 90 | 100 | 사업파트너 강제노동 지표 제외 |
| 5 | 아동노동의 금지(10개) | 아동노동의 금지(10개) | 변동 없음 | 100 | 100 | |
| 6 | 산업안전 보장(17개) | 산업안전 보장(17개) | 변동 없음 | 100 | 96.88 | (평가 고도화) 산재 적용 외 지원 강화 |
| 7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개)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개) | 분야 4. 사업 파트너 강제노동 지표 통합 | 75 | 75 | |
| 8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5개)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5개) | 변동 없음 | 100 | 100 | |
| 9 | 환경권 보장(18개) | 환경권 보장(18개) | 변동 없음 | 94.44 | 94.44 | |
| 10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12개)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13개) | 기관 맞춤형 지표로 일부 변경, 신규 추가 | 100 | 96.15 | 지표 고도화에 따른 점수 변동 |
| 합계(평균) | | | | 95.49 | 95.94 | △0.45점 상승 |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2024)

| 2개분야 | | 항목(6개 항목, 총 15개 세부지표) | 담당부서 | 유효지표 수 (= 전체 수) | 진단결과 | |
|---|---|---|---|---|---|---|
| | | | | | 점수 | 점수(백점 환산) |
| 1 |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및운영관리 (8개) | 1)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2개) | 예술교육팀 | 2 | 4 | 100 |
| 2 | | 2) 사업운영(4개) | 예술교육팀 | 4 | 8 | 100 |
| 3 | | 3) 안전관리(2개) | 예술교육팀 | 2 | 3 | 75 |
| 4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만족도제고노력 (7개) | 1) 직원 인권보호(2개) | 기획조정팀<br>예술교육팀 | 2 | 4 | 100 |
| 5 | | 2)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보호(3개) | 예술교육팀 | 3 | 4 | 66.67 |
| 6 | | 3)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2개) | 예술교육팀 | 2 | 4 | 100 |
| 합계(평균) | | | | 15 | 27 | 90.28 |

## 붙임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

| No | 분야 | 대상 | 핵심이슈 | 개선계획 |
|---|---|---|---|---|
| 1 | 고객인권 | 이용객 | 이용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운용 | 교육운영 시, 시설(공간 포함) 및 교육재료 등이 참가자(아동·청소년 등)에 위해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br>–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및 운용** |
| 2 | 공급망 관리 | 사업 파트너 | 사업 파트너에 대한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 이행 요청 | 참가자(아동·장애인 등) 특성을 고려한 강사 등 **외부 전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인권보호 서약제도 운용** |
| 3 | 공급망 관리 | 사업 파트너 |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경영 문화확산 | **주요 사업 파트너(협력사, 예술인 등)에 대한 인권경영 홍보 추진**<br>– 인권·ESG경영 홍보 및 기관 신고제도 안내 포함 |

※주요사업 부문의 경우, 금차년도는 다른 사업이므로 직전년도와의 비교 미실시

# Ⅴ. 유효성 검증

## ❑ 외부 전문가(한국인권경영연구소)

| 검증범위 | 검증의견 |
|---|---|
|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선언 | 인권경영규정 및 선언문 제정·공표,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및 기관현황을 반영한 정기적 인권경영정책의 검토 등이 보고원칙의 핵심입니다.<br>재단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인권경영 운영지침은 물론 구제절차 매뉴얼 등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br>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동향을 반영하여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권영향평가 | 재단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인권 리스크 평가의 핵심과정인 대내외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br>진단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에 있어 각 부문에서 금년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선 이행을 완료하고, 개선성과를 보고하는 절차 진행을 권고드립니다. |
| 구제절차 | 재단은 임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제도 외에도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홈페이지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이해하기 쉽게 절차도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 세칙 및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 후 공개 하였습니다.<br>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점검을 통해 개선 이슈 점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권경영 교육 | 국제표준 및 인권위 보고지침에서는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법정의무 외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의 경우 금년 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인권 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 내재화를 위해 차년도에도 법정의무 외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br>교육 주제 선정 시, 인권경영의 이해 관련 뿐아니라,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제언 드립니다. |
| 종합평가 공개 및 소통 활동 | 재단은 현재 외부위원 4인이 포함된 인권경영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인권정책 권고 및 인권경영 보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이 도출 됩니다.. 성과물 및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ESG추진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성과 홍보 및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 하겠습니다. |
| 종합의견 | 보고현황에 대한 신뢰성 검토(정보 사실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이 요구하는 구성항목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충실히 작성되었으며, 일부 필요 요소(보고에 대한 대외 소통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